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 조 법 · 제도 담당

제 목 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가이드라인
송부(2차)

1. 한공조 2020-126[재활용방치폐기물 매립처분부담금 면제 신고 관련 환경부 조치 사항 알림(긴급), '20.3.27] 관련입니다.

2. '20.3.24 개정 공포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시행령과 관련하여 환경부 '적극행정심의위원회'(20.4.20)에서 결정된 재활용방치폐기물의 소각잔재물 매립처분 부담금 면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 기간인 '21.3.31까지 조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대상 : 지자체장이 대집행을 통해 불법투기·방치폐기물을 위탁 처리 업체(소각업체)에 소각하는 경우

※ 소각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분 후 발생한 소각잔재물을 매립 처분 하는 경우 포함

나. 적용기간 : '20.1.1~'20.6.30까지 매립한 불법폐기물의 소각잔재물

다. 증빙서류 : 붙임 문서 中 “[2] 불법폐기물 소각 잔재물에 대한 감면” 참조

붙 임 : 자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이드라인 1부. 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담당 김성찬 대외협력팀장 오은석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21 - 6호 (2021. 1. 6) 접수
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자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가이드라인

(‘20.4.27, 자원순환정책과)

① 불법폐기물 대집행에 따른 감면

- (적용방향) 지자체장이 대집행을 통해 불법투기·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(소각잔재물 매립시 적용방안은 아래 별도규정)시 부담금을 감면하며,
 -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업체가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‘19.8.8 ~ ‘20.6.30일까지 처리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
- (주요 증빙서류)
 - ① 불법투기·방치 폐기물 대집행 계획 또는 결과보고서 사본
 - ②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(폐관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)
 - ③ 지자체 공문 등 증빙서류(처리업체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)

② 불법폐기물 소각 잔재물에 대한 감면

- (적용방향) 지자체장 또는 위탁처리 업체가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 매립시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한시적* 인정, 부담금 감면
 - * ① (지자체 매립시) ‘19.8.8일 ~ ‘20.6.30일까지 매립한 소각잔재물에 적용
 - ② (소각업체 매립시) ‘19.8.8일 이후 지자체와 처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, 동 계약일 이후 부터 ‘20.6.30일까지 매립한 소각잔재물에 적용
- ※ 환경부 ‘적극행정심의위원회’ 의결사항(‘20.4.20일)

[조합 추가설명]

- ‘19.8.8~‘20.6.30까지 처리된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에 한해 면제 대상에 해당되며, ‘19.11 시행된 ‘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’에 따라 “불법 폐기물 임시보관장 및 보관기간”을 승인받은 경우도 ‘20.6.30까지 처리된 소각잔재물에 한해 매립처분부담금 면제(※ ‘20.6.30 이후 처리한 소각잔재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)

-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 매립량은 신고자의 불법폐기물 소각량과 전년도 총 소각량(불법폐기물 포함 전체) 대비 잔재물 매립률(이하 전체 매립률)을 곱하여 계산하되, 매립률 최대값은 30%를 초과하지 못함

※ 감면대상 매립량 = 신고자의 불법폐기물 소각량 × 전체 매립률(최대 30%이내)

[조합 부가설명]

-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 발생 비율 적용은 최대 30%까지 가능하며, 전년도 가연성 폐기물 전체 처리량 대비 소각잔재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별 비율 상이

예) ① 전년도 가연성폐기물 전체 처리량 대비 소각잔재물 발생량이 30% 이상(예 43%)일 경우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 발생량 30%에 한해 매립부담금 전액 면제

② 전년도 가연성폐기물 전체 처리량 대비 소각잔재물 발생량이 30% 미만(예 23%)일 경우 불법폐기물 소각잔재물 발생량 23%에 한해 매립부담금 전액 면제

※ <참고> '19년 불법폐기물 잔재물 발생량 조사결과 평균은 약 41.9%임(국립환경과학원)

○ (주요 증빙서류)

- ① 불법투기·방치 폐기물 대집행 계획 또는 결과보고서 사본
- ② 지자체-소각업체간 위탁계약서 사본(배출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)
- ③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(폐관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)

③ 분기별 불연성 폐기물 성적서 제출관련

- (적용방향) 기 매립한 폐기물이 불연성 폐기물임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각 분기별 성분 분석서를 제출하되,

※ (매립시 부담금 요율) 불연성폐기물(10원/kg) , 가연성폐기물(25원/kg)

- 매립 처리한 기간이 총 3개월 이내(2개 분기에 걸친 경우 포함)인 경우 처리 기간내 실시한 1개 분석서로 불연성 여부 판단

- (주요 증빙서류) 폐기물전문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

④ '폐기물 공동처리' 또는 '공동방지지설' 운영시 중소기업 감면

- (적용방향) 공동운영기구 구성원 중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각·매립량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적용
 - 다만,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 체계와 통일성(배출자 신고주체, 총괄 관리) 유지를 위해 기존처럼 공동운영기구 대표자가 부담금 신고·납부
 - * (사업장폐기물 공동 처리)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'배출자신고', '실적보고', '개별사업자별 처리상황 기록' 등 의무 부과
 - * (폐수 등 공동방지지설)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는 '배출자신고'를 해야하며, 각 개별업체별 용수사용량 및 폐수배출량 등을 기록해야 함
- (주요 증빙서류) 공동운영기구의 총 소각·매립량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증빙서류 제출
 - ① 별지 제10호의 공동처리 배출자신고증명서(공동방지지설의 경우 제외)
 - ②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(폐관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)
 - ③ 공동방지지설 운영시 추가서류 제출(예. 수질오염공동방지지설 기준)
 - 공동방지지설 설치 증빙서류(운영규약 등)
 - 공동운영기구 구성원 감면신청 총괄표(자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기준으로 엑셀로 작성)
 - 공동운영기구 구성원별 중소기업 감면증빙서류
 - 각 구성원별 소각·매립량 구분 현황 및 증빙서류(각 대상 업소 연간 폐수배출량(운영일지 등) 및 이를 근거로한 소각·매립량 등)

⑤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량 증빙

- (적용방향)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·매립량이 5%미만인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

○ (주요 증빙서류) 연간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·매립량 증빙서류

·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	- 「폐관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- 「폐관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1항제3호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
·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	- 「폐관법 시행규칙」 제60조제1항제4호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
·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	- 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
·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	-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재활용결과보고서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-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

6 공통사항

- 징수기관은 상기 서류 외에도 기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징수기관은 상기 서류의 제출 목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타 서류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음